

경운대학교 전산정보센터운영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 규정에 의거 전산정보센터의 조직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 및 위치) 본 센터는 경운대학교 전산정보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라 칭하고 경운대학교 내에 둔다.

제3조(업무) ① 센터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행한다.

1. 학생 교육을 위한 정보화 지원
2. 교수 연구 및 활동 지원
3. 학사·행정·입시 등 관련 업무의 전산화
4. 정보화 업무에 관한 계획·연구·개발
5. 교내·외 정보화 교육의 계획과 집행
6. 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
7. 대학 전산망(교내·교외) 구축 및 운영, 관리
8. 대학 정보보호 관련 업무
9. 기타 본 센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
② 전항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장이 따로 세칙을 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
제2장 조 직

제4조(구성) ① 센터에는 센터(소)장, 행정·기술직원, 실습조교를 두며,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산정보과를 두며, 하부조직으로 정보운영계, 정보개발계, 정보보안계를 둔다.

② 센터(소)장은 경운대학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센터업무를 총괄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중임할 수 있다

③ 정보운영계는 정보자원의 관리, 정보시스템·전산망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분장한다.

④ 정보개발계는 학사·행정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와 각종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업무

를 분장한다.

⑤ 정보보안계는 정보보호(정보보안, 개인정보보호)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분장한다.

제3장 운영위원회

제5조(운영위원회) ① 센터의 연구업무와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운영위원은 센터(소)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센터(소)장이 되며,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중임할 수 있다.

⑤ 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로 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제6조(운영위원회 기능)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1. 센터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
2. 센터의 사업계획 및 예·결산 심의
3.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4.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4장 재 정

제7조(재정) 센터의 재정은 교비, 기부금 및 보조금,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.

제8조(회계) 센터의 회계는 우리 대학교 예산회계규정에 따른다.

제9조(회계연도) 센터의 회계연도는 경운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2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